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제953호 2013. 4.11(목)

차 례

규 칙

-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0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
일부개정규칙 ----- 1

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

2013년 4월 11일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807 호

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 “아파트 전면도색”을 “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면도색”으로 한다.

별표 1 총사업비 란 중 “5백만원 이하”를 “7백만원 이하”라 하고 “5백만원 초과~2천만원 이하”를 “7백만원 초과~2천만원 이하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(2013. 4.11 일부개정)

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 (제6조 관련)

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

총 사업비	지 원 기 준		비 고
	의무관리	임의관리	
7백만원 이하	전 액	전 액	
7백만원 초과 ~ 2천만원이하	총사업비 x 70/100범위내	총사업비 x 80/100범위내	
2천만원 초과 ~ 3천만원이하	총사업비 x 65/100범위내	총사업비 x 75/100범위내	
3천만원 초과 ~ 4천만원이하	총사업비 x 60/100범위내	총사업비 x 70/100범위내	
4천만원 초과 ~ 5천만원이하	총사업비 x 55/100범위내	총사업비 x 65/100범위내	

※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2천7백5십만원, 임의관리 단지는 3천2백5십만원으로 한다.